제765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1.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 마련(강화)일정 성능 이상의 자동역류방지댐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 접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	1.비중요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강화(강화)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실무 경력은 산업디자인분야를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술사(기능장)·기사 자격소지자 나. 산업기사 자격소지사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다. 기능사 자격소지사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학력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디자인 전공자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실무 경력자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나. 준 전공자(일반미술학과)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실무 경력자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졸업자로 6년이상 실무 경력자 다. 비 전공자 1)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이상 실무 경력자 2)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자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요건 조정(제4조제3항, 별표 1)(강화) 가. 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제4조, 별표1) 친환경차의 일반적인 분류에 맞춰 “저속전기차”를 삭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하고, “초소형 전기차”를 신설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일치 나. 기술적 세부사항(안 제4조) 1충전 주행거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친환경차의 최저 기술수준으로, 최고속도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제한 속도 등을 반영하여 현행화 다. 에너지소비효율(안 제4조) 하이브리드차는 차급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기준과 일치시키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현실화 초소형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신설(5.0km/kWh)하고, 전기승용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실화(경·소형 : 5.0km/kWh, 중·대형 3.7km/kWh)	
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해양수산부)	1.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 형식승인 기준(신설) 선원이 선원실에서 휴식 · 취침하거나,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접근이 어려울 경우 조난버튼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토록하기 위해, 원격조난신호발신장치의 제작 및 성능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1.비중요
5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	1.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 강화 (강화)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2.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 강화 (강화) - 판매자에게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품전면에 부착하고 교육자료 제공을 의무화 3.사용 등의 신고대상 방사선기기 취급기준(신설) - 사용장소를 지정하고, 사용 전 기기의 정상상태 여부를 확인하며 장비의 안전계통 임의조작 등을 금지 4.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의무 규정(신설) - 작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사선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부여	
6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소방청)	1.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강화)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개정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조, 제8조, 제9조, 제13조	1.비중요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소방청)	1.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신종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 추가 지정(강화) 시행규칙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범위에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 추가 2.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대상에 신종 업종(방탈출,키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즈,만화카페) 추가(강화) 시행규칙 제11조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제출대상 범위에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 3개 업종 추가 3.발코니 및 부속실의 피난유효성을 위한 면적기준 추가(강화) - 발코니 기준을 “가로75cm・세로150cm・높이 100cm이상”에서 “면적 1.12㎡이상”을 추가 - 부속실 기준을 “가로75cm・세로150cm이상”에서 “면적 1.12㎡이상”을 기준 추가	